



정책 I

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

농림수산식품부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	○ 가축사육시설면적 : 300㎡ 초과	○ 가축사육시설면적 : 50㎡ 초과	축산업 시행령 (2009. 6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등록대상 추가	○ 축산업 등록기준 - 종축업 : 종돈업, 종계 업	○ 축산업 등록기준 - 종축업 : 종돈업, 종계업, 종오리업	축산업 시행령 (2009. 6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축산발전기금 용자 취급기관 확대	○ 용자취급기관 - 농협, 일반 시중은행	○ 용자취급기관 - 농협, 일반 시중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	축산업 시행령 (2008. 12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	○ 재발급 요청시 - 당초 발급한 시·도지 사	○ 재발급 요청시 - 모든 시·도지사	축산업 시행규칙 (2008. 12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위·변조 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 발급	○ 등급판정확인서 복사시 위·변조 방지장치가 없 어 위·변조 가능 ○ 인터넷 발급 없음	○ 등급판정확인서 위·변조 방지장치 마련 - 복사시 '사본' 글씨가 표시되고, '원본'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 -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 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 추가 발급 가능	축산업 시행규칙 (2008. 12월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(02-500-2063)
도축장 구조조정 지원	○ 신설	○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축능력을 유 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·지원 -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 회를 법인으로 설립 -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에서 도축장경영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등 으로 도축장구조조정지금을 조성하여 폐업하 는 도축장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.	도축장구조조정법 (2008. 12. 14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(02-500-2105)
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	○ 신설	○ 농림 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	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(공포 후 6월)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(02-500-1789)

■ 내용해설

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

□ 2008. 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고, 2009.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,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이다.

-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융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양계·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㎡ 초과하는 경우에서 50㎡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,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및 등급판정확인서 위·변조 장치 마련

□ 2008. 12월부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을 개선하고, 등급판정확인서 위·변조 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개정과 함께 인터넷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이다.

-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시 당초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.
- 등급판정확인서에 위·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,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국민 신뢰향상이 기대된다. 

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>알림소식>새소식>보도자료>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파일을 참조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(02-500-2063)으로 문의하세요!